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골재채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과태료 부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순한 신고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7442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기관 추가(안 제4조)

전국 육지 및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골재자원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대행 전문기관으로 골재자원의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조직을 보유한 민간 연구기관 참여 확대

나. 과태료 부과 기준의 정비(안 별표3)

법률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순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으로 조정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금액을 과태료 상한액의 50%이상으로 조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1.)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2020. 11.)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골재자원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

별표 3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2차	3차
가.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기간 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도 및 합병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호	200만원	350만원	500만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2호	200만원	350만원	500만원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3호	200만원	350만원	50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골재자원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제4조(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골재자원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3539